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604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2024.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604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1호, 2024.7.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유형별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간편조리세트와 같이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에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안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허용[안 Ⅱ. 1. 너. 10)]

- 1) 식품의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포장의 재질 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수출 식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2) 수출 식품은 수출 계약이 변경되거나 파기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국어로만 인쇄된 용기·포장에 스티커 등으로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임에도 제품을 폐기하는 등의 영업자 피해 발생
-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출 제품에 대해 기부용, 행사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안 Ⅲ. 1. 가. 2), 나. 2), 라. 2), 사. 2), 자. 2),
타. 2), 파. 1)·2), 하. 2), 거. 2), 너. 2), 더. 2), 러. 2), 머. 2), 버. 2),
서. 2), 어. 2), 저. 2) 및 처. 2))

- 1) 영양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식품유형별로 반영하여 조문 정비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정비(안 Ⅱ. 1. 사., Ⅲ. 1. 라. 2) 거),
사. 2) 거), 너. 2) 거), 버. 1), 버. 2) 거), 처. 2) 하), [표 4], [표
5])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미감의 유형 명칭 및 식품첨가물 명칭
정비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
식위탁생산식품의 경우 위탁생산제품(OE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
된 제품은 표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통전문판매
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
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수입식품과 관

련이 없으므로 영업자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 정비

- 3) 곡류가공품 등 일부 식품유형에 대해 다른 식품유형으로 오인·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상의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한 규정 정비
- 4) 전분류 중 ‘전분가공품’의 경우 제품명에 ‘전분’ 의무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조항으로 ‘전분가공품’에는 식품 유형의 명칭인 ‘전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 간 충돌로 인한 영업자의 혼선이 발생하므로 규정 정비로 영업자 혼선 방지

라.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마련(안 『별지 1』 1. 아. 2) 및 [도 3] 1. 사.)

- 1)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표시 필요성 지속 제기
- 2)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양표시 도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0, 팩스: 043-719-2180, 이메일: aeiou2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1. 사.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과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Ⅱ. 1. 너.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용 식품을 안전과 관련 없는 계약 변경 등의
사유로 수출하지 못하여, 국내 기부용 또는 행사용 등으로 무상
제공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식품등의 제조·
가공 또는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포함
될 목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완제품 형태)으로서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Ⅲ. 1. 가. 2) 마) 중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표시)”를 “표시. 다만, 추잉껌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추잉껌은 제외)

Ⅲ. 1. 나. 2) 마) 중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표시)”를 “표시. 다만, 얼음류는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얼음류는 제외)

Ⅲ. 1. 라. 2) 마) 중 “당류가공품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 거) (7)을 삭제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사. 2) 마) 중 “표시. 다만, 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를 “표시)”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2) 거) (18)을 삭제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아. 2) 거)의 “주정처리제품”을 “주정처리 제품은 “주정처리제품”

으로 한다.

Ⅲ. 1. 자. 2) 마) 중 “침출차 및 고행차”를 “침출차”로,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를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로 하고, 같은 2) 사) 중 “침출차 및 고행차”를 “침출차”로,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를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로 한다.

Ⅲ. 1. 타. 2) 마) 중 “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을 “한식메주, 한식된장”으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한식메주, 한식된장은 제외)

Ⅲ. 1. 파. 1) 가)와 2) 가)(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가) (4) 중 “식초”를 각각 “식초류”로 하고, 같은 가) (5) 중 “식초(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카레만 해당한다)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표시)”를 “표시. 다만, 식초류 중 희석초산, 향신료가공품 중 천연향신료 및 식염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로 하며, 같은 가)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양성분(식초류 중 희석초산, 향신료가공품 중 천연향신료, 식염은 제외)

Ⅲ. 1. 하. 2) 마) 중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 절임류(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조림류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표시)”를 “표시. 다만, 배추김치에 해당하지 않는 김치는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로 하며,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배추김치에 해당하지 않는 김치는 제외)

Ⅲ. 1. 거. 2) 하) (15) 중 “1. 저목”을 “1. 커목”으로 한다.

Ⅲ. 1. 너. 2) 마) 중 “표시. 다만, 찌뽕, 효소식품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를 “표시)”로 하며,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너. 2) 거) (1) (가)의 “제품명에”를 “전분류 중 전분은 제품명에”로 하고, 같은 거)에 (6)을 삭제하고, (7)을 (6)으로 한다.

Ⅲ. 1. 더. 2) 마) 중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분쇄가공육제품만 해당),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함유가공품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표시)”를 “표시. 다만, 포장육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포장육은 제외)

Ⅲ. 1. 러. 2) 마) 중 “표시. 다만, 알가공품류 중 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를 “표시)”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머. 2) 마) 중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즈류, 분유류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버. 1) 라)의 “조미김”을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하고, 같은 목 2) 마) 중 “표시. 다만, 한천, 수산가공식품류 중 수산물 100퍼센트 제품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를 “표시)”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버. 1) 라) 2) 거) (6)을 삭제하고, (7)을 (6)으로 한다.

Ⅲ. 1. 서. 2) 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 사)부터 하)까지를 각각 아)부터 거)까지로 하며, 같은 2)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

로 표시. 다만,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

사) 영양성분(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은 제외)

Ⅲ. 1. 어. 2) 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벌꿀류 및 로열젤리는 다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나) 영양성분

Ⅲ. 1. 어. 2) 나)(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나) (7)부터 (13)까지를 각각 (8)부터 (14)까지로 하며, 같은 나)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7) 영양성분

Ⅲ. 1. 저. 2) 마)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만두류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처. 2) 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에 하) (2)를 삭제하며, 같은 2) 사)부터 하)까지를 각각 아)부터 거)까지로 하고, 같은 2)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사) 영양성분

『별지1』 1. 아. 2) 가) (5)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자연상태 식품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 3]의 사.를 적용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이 경우 자연상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값을 활용할 수 있다.

[도 3] 1.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자연상태 식품-가공식품 구분형

1) 총 내용량(1 포장)당

영양정보			
가공식품 00g		자연상태 식품 00g	
000kcal		000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총 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00mg 00%	00mg 00%
탄수화물	00g 00%	00g 00%	00g 00%
~~당류	00g 00%	00g 00%	00g 00%
지방	00g 00%	00g 00%	00g 00%
~~트랜스지방	00g -	00g -	00g -
~~포화지방	00g 00%	00g 00%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00mg 00%	00mg 00%
단백질	00g 00%	00g 00%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산물에 대한 영양정보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제공하는 참고용 값입니다.

2) 100g(ml)당

영양정보			
가공식품 00g		자연상태 식품 00g	
000kcal		000kcal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00mg 00%	00mg 00%
탄수화물	00g 00%	00g 00%	00g 00%
~~당류	00g 00%	00g 00%	00g 00%
지방	00g 00%	00g 00%	00g 00%
~~트랜스지방	00g -	00g -	00g -
~~포화지방	00g 00%	00g 00%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00mg 00%	00mg 00%
단백질	00g 00%	00g 00%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산물에 대한 영양정보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제공하는 참고용 값입니다.

3) 단위내용량당

영양정보			
가공식품 00g		자연상태 식품 00g	
000kcal		000kcal	
1조각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1조각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00mg 00%	00mg 00%
탄수화물	00g 00%	00g 00%	00g 00%
~~당류	00g 00%	00g 00%	00g 00%
지방	00g 00%	00g 00%	00g 00%
~~트랜스지방	00g -	00g -	00g -
~~포화지방	00g 00%	00g 00%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00mg 00%	00mg 00%
단백질	00g 00%	00g 00%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산물에 대한 영양정보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제공하는 참고용 값입니다.

[표 4] 중 ‘말티톨시럽’을 ‘말티톨액’으로 하고, ‘폴리글리시톨시럽’을 ‘폴리글리시톨액’으로 한다.

[표 5] 중 ‘폴리글리시톨시럽’을 ‘폴리글리시톨액’으로 하고, ‘시클로덱스트린시럽’을 ‘시클로덱스트린액’으로 한다.

부칙<제2025- 호, 2025.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1. 사., 너. 10), Ⅲ. 1. 라. 2) 거) (7), 사. 2) 거) (18), 아. 2) 거), 파. 1) 가), 파. 2) 가), 파. 2) 가) (4) · (15), 너. 2) 거) (6) · (7), 버. 2) 거) (6) · (7), 처. 2) 하) (2)의 개정 사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너. (생 략)

1) ~ 9) (생 략)

<신 설>

더. ~ 어. (생 략)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생 략)

2) 표시사항

가) ~ 라) (생 략)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에 한하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너.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용 식품을 안전과 관련 없는 계약 변경 등의 사유로 수출하지 못하여, 국내 기부용 또는 행사용 등으로 무상 제공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식품등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집단급식소에 서의 식단에 포함될 목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완제품 형태)으로서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더. ~ 어. (현행과 같음)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

가.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내용량 -----

----- 표시. 다만, 추잉

	<u>겉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u>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사) <u>영양성분(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에 한함)</u>	사) <u>영양성분(추잉껌은 제외)</u>
아) ~ 거) (생 략)	아) ~ 거)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나. <u>빙과류</u>	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 하는 열량(단, 열량은 아 이스크림류 및 빙과에 한 하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u>	마) ----- ----- 내 용량 ----- ----- 표 시. 다만, 얼음류는 내용 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사) <u>영양성분(아이스크림류, 빙과에 한함)</u>	사) <u>영양성분(얼음류는 제외)</u>
아) ~ 거) (생 략)	아) ~ 거)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u>당류</u>	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2) -----

가) ~ 라) (생 략)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
하는 열량(단, 열량은 당
류가공품에 한하며 내용
량 뒤에 괄호로 표시)

바) (생 략)

사) 영양성분(당류가공품에
한함)

아) ~ 하) (생 략)

거) 기타표시사항

(1) ~ (6) (생 략)

(7) 당류가공품은 「식품위
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별 기준 및 규격상의 식
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생 략)

마. · 바. (생 략)

사. 식용유지류

1) (생 략)

2) 표시사항

가) ~ 라) (생 략)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
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
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다만, 동물성유지류, 식용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내
용량 -----

바) (현행과 같음)

사) 영양성분

아) ~ 하) (현행과 같음)

거)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마. · 바. (현행과 같음)

사.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표시)

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

바) (생 략)

사) 영양성분(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
조치즈, 기타식용유지가
공품은 제외)

아) ~ 하) (생 략)

거) 기타표시사항

(1) ~ (17) (생 략)

(18)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
격상의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생 략)

아. 면류

1) (생 략)

2) 표시사항

가) ~ 하) (생 략)

거) 기타표시사항

살균제품은 살균여부에 따
라 “살균제품”, “주정처리제
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

바) (현행과 같음)

사) 영양성분

아) ~ 하) (현행과 같음)

거) -----

(1) ~ (17)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아. ----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 주정처리 제
품은 “주정처리제품”-----

다.	---
자. 음료류	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다만, 다류 중 <u>침출차</u> 및 <u>고형차</u> , 커피 중 <u>볶은커피</u> 및 <u>인스턴트커피</u> 는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	마) ----- ----- ----- ----- <u>침출차</u> --- ----- <u>볶은 커피</u> , <u>인스턴트 커피</u> 및 <u>커피원두</u> 에 <u>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u> 는 -----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사) <u>영양성분</u> (다류 중 <u>침출차</u> 및 <u>고형차</u> , 커피 중 <u>볶은커피</u> 및 <u>인스턴트커피</u> 는 제외)	사) ----- <u>침출차</u> --- ----- <u>볶은 커피</u> , <u>인스턴트 커피</u> 및 <u>커피원두</u> 에 <u>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u> ---
아) ~ 거) (생 략)	아) ~ 거)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차. 카. (생 략)	차. 카. (현행과 같음)
타. 장류	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다만, <u>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u>) 바) (생 략) 사) <u>영양성분(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u> 아) ~ 거) (생 략) 3) (생 략) 파. 조미식품 1) 유형 가) <u>식초</u> 나) ~ 바) (생 략) 2) 표시사항 가) <u>식초</u>, <u>소스류</u>, <u>카레(커리)</u>, <u>고춧가루</u> 또는 <u>실고추</u>, <u>향신료가공품</u>, <u>식염(천일염 제외)</u> (1) ~ (3) (생 략) (4) 소비기한(<u>식초</u> 및 멸균한 카레(커리)제품은 소비	마) ----- ----- ----- ---- <u>한식메주, 한식된장</u> ----- ----- ----- 바) (현행과 같음) 사) <u>영양성분(한식메주, 한식된장은 제외)</u> 아) ~ 거)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파. ----- 1) --- 가) <u>식초류</u> 나) ~ 바) (현행과 같음) 2) ----- 가) <u>식초류</u>-----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식초류</u> ----- -----
--	--

기한 또는 품질유지기 한, 식염은 제조연월일)	-----
(5)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 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u>식초(발효식초만 해당 한다), 소스류, 카레(카 레만 해당한다) 및 향 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 품만 해당한다)에 한하 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u>	(5) ----- ----- - <u>내용량</u> ----- ----- ----- ----- ----- ----- 표시. 다만, 식 초류 중 희석초산, 향 신료가공품 중 천연향 신료 및 식염은 내용 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 시 제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u>영양성분(단, 열량은 식 초(발효식초만 해당한 다), 소스류, 카레(카레 만 해당한다) 및 향신 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 만 해당한다)에 한함)</u>	(7) <u>영양성분(식초류 중 희 석초산, 향신료가공품 중 천연향신료, 식염은 제외)</u>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15) 기타표시사항 (가) <u>식초</u> (나) ~ (마) (생 략)	(15) ----- (가) <u>식초류</u> (나) ~ (마) (현행과 같

	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하. 절임류 또는 조림류	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 하는 열량(단, 열량은 <u>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 절임류(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조림류에 한하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u>	마) ----- ----- <u>내</u> <u>용량</u> ----- ----- ----- ----- ----- <u>표시. 다</u> <u>만, 배추김치에 해당하지</u> <u>않는 김치는 내용량에 해</u> <u>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u>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사) <u>영양성분[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 절임류(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조림류에 한함]</u>	사) <u>영양성분(배추김치에 해당하지 않는 김치는 제외)</u>
아) ~ 거) (생 략)	아) ~ 거)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거. 주류	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2) -----

가) ~ 파) (생략)

하) 기타표시사항

(1) ~ (14) (생략)

(15) 영업자가 주류(주정
제외)에 열량 정보를
스스로 표시하는 경
우에는 규칙 제6조제
1항의 별표 4. 1. 저
목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생략)

너. 농산가공식품류

1) (생략)

2) 표시사항

가) ~ 라) (생략)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
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
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다만, 찌쌀, 효소식품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

바) (생략)

사) 영양성분(찌쌀, 효소식품
은 제외)

아) ~ 하) (생략)

거) 기타표시사항

(1) 전분류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

(1) ~ (14) (현행과 같음)

(15) -----

----- 1. 커
목-----
---.

3) (현행과 같음)

너. -----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표시)

바) (현행과 같음)

사) 영양성분

아) ~ 하) (현행과 같음)

거) -----

(1) 전분류

(가) <u>제품명에</u> 전분을 사용 하여야 한다.	(가) <u>전분류 중 전분은 제</u> <u>품명에</u>-----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u>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u> <u>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u> <u>기타 농산가공품은 「식</u> <u>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u> <u>식품별 기준 및 규격상의</u> <u>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u> <u>의 명칭을 표시하여서는</u> <u>아니 된다.</u>	<<u>삭 제</u>>
(7) (생 략)	(6) (현행과 같음)
더.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 하는 열량(단, 열량은 <u>햄</u> <u>류, 소시지류, 베이컨류,</u> <u>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u> <u>(양념육 · 분쇄가공육제</u> <u>품만 해당), 식육추출가공</u> <u>품 및 식육합유가공품에</u> <u>한하며, 내용량 뒤에 괄</u> <u>호로 표시)</u>	마) ----- ----- <u>내</u> <u>용량</u> ----- ----- ----- ----- ----- ----- ----- <u>표시. 다만, 포장</u>

	<u>육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u>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사) <u>영양성분(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분쇄 가공육제품만 해당),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합유가공품에 한함)</u>	사) <u>영양성분(포장육은 제외)</u>
아) ~ 거) (생 략)	아) ~ 거)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러. <u>알가공품류</u>	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다만, 알가공품류 중 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u>	마) ----- ----- ----- <u>표시)</u>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사) <u>영양성분(알가공품류 중 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u>	사) <u>영양성분</u>
아) ~ 거) (생 략)	아) ~ 거) (현행과 같음)

3) (생 략)

머. 유가공품류

1) (생 략)

2) 표시사항

가) ~ 라) (생 략)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
하는 열량(단, 열량은 우
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즈류, 분유류
에 한하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바) (생 략)

사) 영양성분(우유류, 가공유
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
즈류, 분유류에 한함)

아) ~ 거) (생 략)

3) (생 략)

버. 수산가공식품류

1) 유형

가) ~ 다) (생 략)

라) 조미김

마) ~ 바) (생 략)

2) 표시사항

가) ~ 라) (생 략)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
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

3) (현행과 같음)

머.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내
용량 -----

바) (현행과 같음)

사) 영양성분

아) ~ 거)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버. -----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
김)

마) ~ 바)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u>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u> <u>다만, 한천, 수산가공식품</u> <u>류 중 수산물 100퍼센트</u> <u>제품은 내용량에 해당하</u> <u>는 열량 표시 제외)</u> 바) (생 략) <u>사) 영양성분(한천, 수산가공</u> <u>식품류 중 수산물 100퍼</u> <u>센트 제품은 제외)</u> 아) ~ 하) (생 략) 거) 기타표시사항 (1) ~ (5) (생 략) <u>(6) 기타 수산물가공품은</u> <u>「식품위생법」 제7조에</u> <u>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u> <u>격상의 식품군, 식품종,</u> <u>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u> <u>하여서는 아니 된다.</u> <u>(7) (생 략)</u> 3) (생 략) 서. 동물성가공식품류 1) (생 략) 2) 표시사항 가) ~ 라) (생 략) <u>마) 내용량</u>	----- <u>표시)</u> 바) (현행과 같음) <u>사) 영양성분</u> 아) ~ 하) (현행과 같음) 거) ----- (1) ~ (5) (생 략) <삭 제> <u>(6) (현행과 같음)</u> 3) (현행과 같음) 서.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u> <u>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u> <u>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u>
--	---

바) (생략)

<신설>

사) ~ 하) (생략)

3) (생략)

어.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1) (생략)

2) 표시사항

가) 벌꿀류 및 로열젤리류(로열젤리에 한함)

(1) ~ (3) (생략)

<신설>

나) 로열젤리제품(로열젤리 제외) 및 화분가공식품

(1) ~ (4) (생략)

(5) 내용량

다만, 기타식육 또는 기타
알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

바) (현행과 같음)

사) 영양성분(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은 제외)

아) ~ 거) (현행 사)부터 하)
까지와 같음)

3) (현행과 같음)

어. -----

1) (현행과 같음)

2) -----

가) -----

(1) ~ (3) (현행과 같음)

(4) 벌꿀류 및 로열젤리는 다
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
량은 내용량 뒤에 괄
호로 표시)

(나) 영양성분

나) -----

(1) ~ (4) (현행과 같음)

(5)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

	<u>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 시)</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영양성분</u>
<u>(7) ~ (13)</u> (생 략)	<u>(8) ~ (14)</u> (현행 (7)부터 (1 3)까지와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저. 즉석식품류	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 하는 열량(단, 열량은 즉 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 식품, 만두류에 한하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 시)	마) ----- ----- <u>내용</u> <u>량</u> ----- -----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사) <u>영양성분(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만두류 에 한함)</u>	<u>사) 영양성분</u>
아) ~ 거) (생 략)	아) ~ 거)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처. 기타식품류	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내용량</u>	마) <u>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u> <u>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u> <u>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u>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u>영양성분</u>
사) ~ 파) (생 략)	아) ~ 하) (현행 사)부터 파) 까지와 같음)
하) 기타표시사항	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기타가공품은 「식품위</u> <u>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u> <u>별 기준 및 규격상의 식</u> <u>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u> <u>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u> <u>니 된다.</u>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커. ~ 퍼. (생 략)	커. ~ 퍼. (현행과 같음)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영양성분등	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방법	2) -----
가) 공통사항	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5) -----

알아보기 쉽도록 바탕색
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도
3 표시서식도안을 사용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 (생 략)

<신 설>

[도 3]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1. 표시서식도안의 종류

가. ~ 바. (생 략)

<신 설>

-----.

(가) (현행과 같음)

(나)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자연상태 식품과 가공

식품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 3]

의 사.를 적용하여 영

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상

태 식품에 대한 영양

성분은 식품의약품안

전처 식품영양성분 데

이터베이스에서 제공

하는 값을 활용할 수

있다.

[도 3]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1.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자

연상태 식품-가공식품 구

분형

1) 총 내용량(1 포장)당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당 000kcal <table><tr><th></th><th>가공식품 00g</th><th>자연상태 식품 00g</th></tr><tr><th></th><th>000kcal</th><th>000kcal</th></tr><tr><td>총 내용량당</td><td>가공식품에 대한 비율</td><td>100% 기준에 대한 비율</td></tr><tr><td>나트륨</td><td>00mg, 00%</td><td>00mg, 00%</td></tr><tr><td>단수화물</td><td>00g, 00%</td><td>00g, 00%</td></tr><tr><td>당류</td><td>00g, 00%</td><td>00g, 00%</td></tr><tr><td>지방</td><td>00g, 00%</td><td>00g, 00%</td></tr><tr><td>트랜스지방</td><td>00g, -</td><td>00g, -</td></tr><tr><td>포화지방</td><td>00g, 00%</td><td>00g, 00%</td></tr><tr><td>콜레스테롤</td><td>00mg, 00%</td><td>00mg, 00%</td></tr><tr><td>단백질</td><td>00g, 00%</td><td>00g, 00%</td></tr></table>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해당 기준치로 100%의 비율에 대한 비율 수 표시) 자연상태에 대한 영양정보는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제공하는 정보일 것입니다.		가공식품 00g	자연상태 식품 00g		000kcal	000kcal	총 내용량당	가공식품에 대한 비율	100% 기준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00mg, 00%	단수화물	00g, 00%	00g, 00%	당류	00g, 00%	00g, 00%	지방	00g, 00%	00g, 00%	트랜스지방	00g, -	00g, -	포화지방	00g, 00%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00mg, 00%	단백질	00g, 00%	00g, 00%	2) 100g(ml)당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 100g당 000kcal <table><tr><th></th><th>가공식품 00g</th><th>자연상태 식품 00g</th></tr><tr><th></th><th>000kcal</th><th>000kcal</th></tr><tr><td>총 내용량당</td><td>가공식품에 대한 비율</td><td>100% 기준에 대한 비율</td></tr><tr><td>나트륨</td><td>00mg, 00%</td><td>00mg, 00%</td></tr><tr><td>단수화물</td><td>00g, 00%</td><td>00g, 00%</td></tr><tr><td>당류</td><td>00g, 00%</td><td>00g, 00%</td></tr><tr><td>지방</td><td>00g, 00%</td><td>00g, 00%</td></tr><tr><td>트랜스지방</td><td>00g, -</td><td>00g, -</td></tr><tr><td>포화지방</td><td>00g, 00%</td><td>00g, 00%</td></tr><tr><td>콜레스테롤</td><td>00mg, 00%</td><td>00mg, 00%</td></tr><tr><td>단백질</td><td>00g, 00%</td><td>00g, 00%</td></tr></table>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해당 기준치로 100%의 비율에 대한 비율 수 표시) 자연상태에 대한 영양정보는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제공하는 정보일 것입니다.		가공식품 00g	자연상태 식품 00g		000kcal	000kcal	총 내용량당	가공식품에 대한 비율	100% 기준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00mg, 00%	단수화물	00g, 00%	00g, 00%	당류	00g, 00%	00g, 00%	지방	00g, 00%	00g, 00%	트랜스지방	00g, -	00g, -	포화지방	00g, 00%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00mg, 00%	단백질	00g, 00%	00g, 00%
	가공식품 00g	자연상태 식품 00g																																																																	
	000kcal	000kcal																																																																	
총 내용량당	가공식품에 대한 비율	100% 기준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00mg, 00%																																																																	
단수화물	00g, 00%	00g, 00%																																																																	
당류	00g, 00%	00g, 00%																																																																	
지방	00g, 00%	00g, 00%																																																																	
트랜스지방	00g, -	00g, -																																																																	
포화지방	00g, 00%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00mg, 00%																																																																	
단백질	00g, 00%	00g, 00%																																																																	
	가공식품 00g	자연상태 식품 00g																																																																	
	000kcal	000kcal																																																																	
총 내용량당	가공식품에 대한 비율	100% 기준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00mg, 00%																																																																	
단수화물	00g, 00%	00g, 00%																																																																	
당류	00g, 00%	00g, 00%																																																																	
지방	00g, 00%	00g, 00%																																																																	
트랜스지방	00g, -	00g, -																																																																	
포화지방	00g, 00%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00mg, 00%																																																																	
단백질	00g, 00%	00g, 00%																																																																	
3) 단위내용량당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00g*0.00) 1도각당 000kcal <table><tr><th></th><th>가공식품 00g</th><th>자연상태 식품 00g</th></tr><tr><th></th><th>000kcal</th><th>000kcal</th></tr><tr><td>1도각당</td><td>가공식품에 대한 비율</td><td>100% 기준에 대한 비율</td></tr><tr><td>나트륨</td><td>00mg, 00%</td><td>00mg, 00%</td></tr><tr><td>단수화물</td><td>00g, 00%</td><td>00g, 00%</td></tr><tr><td>당류</td><td>00g, 00%</td><td>00g, 00%</td></tr><tr><td>지방</td><td>00g, 00%</td><td>00g, 00%</td></tr><tr><td>트랜스지방</td><td>00g, -</td><td>00g, -</td></tr><tr><td>포화지방</td><td>00g, 00%</td><td>00g, 00%</td></tr><tr><td>콜레스테롤</td><td>00mg, 00%</td><td>00mg, 00%</td></tr><tr><td>단백질</td><td>00g, 00%</td><td>00g, 00%</td></tr></table>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해당 기준치로 100%의 비율에 대한 비율 수 표시) 자연상태에 대한 영양정보는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제공하는 정보일 것입니다.		가공식품 00g	자연상태 식품 00g		000kcal	000kcal	1도각당	가공식품에 대한 비율	100% 기준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00mg, 00%	단수화물	00g, 00%	00g, 00%	당류	00g, 00%	00g, 00%	지방	00g, 00%	00g, 00%	트랜스지방	00g, -	00g, -	포화지방	00g, 00%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00mg, 00%	단백질	00g, 00%	00g, 00%																																		
	가공식품 00g	자연상태 식품 00g																																																																	
	000kcal	000kcal																																																																	
1도각당	가공식품에 대한 비율	100% 기준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00mg, 00%																																																																	
단수화물	00g, 00%	00g, 00%																																																																	
당류	00g, 00%	00g, 00%																																																																	
지방	00g, 00%	00g, 00%																																																																	
트랜스지방	00g, -	00g, -																																																																	
포화지방	00g, 00%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00mg, 00%																																																																	
단백질	00g, 00%	00g, 00%																																																																	

[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 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 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생 략> 말티톨시럽 <생 략> 폴리글리시톨시럽	감미료 (현행과 같음)

[표 5] 명칭 또는 간략명을 표시 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표 5] 명칭 또는 간략명을 표시 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생 략>	
시클로덱스트린시럽	
<생 략>	
폴리글리시톨시럽	폴리글루시톨
<생 략>	(현행과 같음)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생 략>	
시클로덱스트린액	
<생 략>	
폴리글리시톨액	(현행과 같음)
<생 략>	

3) 단위내용량당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00g 0.00g)

1조각당 000kcal

	가공식품 00g	자연상태 식품 00g
	000kcal	000kcal
1조각당	가공식품에 대한 비율	100% 기준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00mg, 00%
단수화물	00g, 00%	00g, 00%
당류	00g, 00%	00g, 00%
지방	00g, 00%	00g, 00%
트랜스지방	00g, -	00g, -
포화지방	00g, 00%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00mg, 00%
단백질	00g, 00%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해당 기준치로 100%의 비율에 대한 비율 수 표시)

자연상태에 대한 영양정보는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제공하는 정보일 것입니다.